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비를 내지 못한 액수를
각 구청별 총괄하면 얼마인가 ?

(임 현 중 위원)

의료보호 비용의 대불은 의료보호법 제 15조 및 동 시행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입원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치 못한경우 신청에 의하여 무이자로 대불
하여 주고 상환은 3개월 경과한 후 3개월간격으로 대불액에

따라 1년 ~ 3년동안에 3회 ~ 12회에 걸쳐 무이자로 상환하
는 제도로서

'91년도 11월 30일 현재 우리시에서는 3,238건 606,818천원을
대불하였으며, 그중 시기도래분은 2,908건 480,931천원

으로 이중 889건 61,536천원을 징수하였고, 시기미도래분은
330건 125,887천원입니다.

시기도래분중 상환능력이 없는분 7건 27,592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상환분 2,012건 391,803천원은 계속 상환토록 촉구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현황

'91. 11. 30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시 기 도 래				시 기 미도래	'91년도 대불액	비고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징수액	결손처분액			
계	480,931 (2,908)	61,536 (889)	391,803 (2,012)	27,592 (7)	125,887 (330)	34,385 (67)	
동 구	186,115 (1,442)	24,721 (396)	161,394 (1,046)		21,228 (37)	12,319 (31)	
중 구	137,073 (686)	18,409 (154)	94,988 (530)	23,676 (2)	58,778 (83)	14,437 (16)	
서 구	55,417 (277)	8,760 (161)	45,098 (115)	1,559 (1)	23,599 (126)	2,785 (8)	
유성구	28,811 (132)	3,305 (58)	23,149 (70)	2,357 (4)	7,244 (36)	2,517 (7)	
대덕구	73,515 (371)	6,341 (120)	67,174 (251)		15,038 (48)	2,327 (5)	

※ () 건수